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40호 2010. 1. 26.(화)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02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체 선정 공고 ----- 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89호 경인아라뱃길사업지구내 토지 출입 통지
공고 ----- 11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뒷면계속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1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7호 신조 공인 공고 ----- 1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4호선,사업명: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사업
공사 완료공고 ----- 2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2류180호선,사업명:
석남중학교 진일로 개설공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3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7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 61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이 훈 국

2010년 1월 26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740호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별표 중 1. 용자조건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지원
자금”의 이자율 “3%”를 “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금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0-5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02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소로3류502호선, 사업명: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73) 및 건설과(560-45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1.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9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도로(소로3류502호선)
 - 【명칭】 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 L = 219.9m, B = 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9월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붙임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용 지 조 서 (소3-502)

조서 번호	소 재 지		지목	공부상면 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주소	지번			계	도로내	도로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관리관계		
1	왕길동	194	대	593	17.9	17.9		김용섭 임보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5 목동아파트 1108동 1105호					
2	왕길동	197-4	도	87	78.6	78.6			국(재무부)					
3	왕길동	196-13	장	291	52.3	49.7	2.6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10-201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4	왕길동	196-2	장	2,237	338.4	274.1	64.3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삼익맨션 210-201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		
5	왕길동	196-14	도	103	83.4	82.0	1.4		인천광역시					
6	왕길동	196-11	도	635	269.7	269.7			인천광역시					
7	왕길동	196-1	장	3,535	279.3	192.7	86.6	두봉완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33-85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근저당권설정		
8	왕길동	산83-10	임	1,080	91.7	66.1	25.6	두봉완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33-85					
9	왕길동	산83-15	임	89	23.0	23.0		유기철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504-401	(주)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0	왕길동	산83-5	임	3,786	143.0	110.6	32.4	유기철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504-401	(주)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1	왕길동	205-1	답	108	31.0	31.0		유기철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504-401	(주)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2	왕길동	205	답	1,170	122.0	88.7	33.3	유기철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504-401	(주)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13	왕길동	204-49	도	1,130	1.4	1.4			인천광역시					
14	왕길동	206	답	557	1.8	1.8		유기철	인천 부평구 삼산동 454-4 행복한마을 서해그랑블 아파트 504-401	(주)하나은행 (주)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 목 적

- 동물보호법 및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추진과 등록대상 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동물등록제 추진에 필요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구입비 등 사업비 지원

- 근거법령

- 동물보호법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 세부 추진계획

- 등록기간 : 2010. 3. 1. ~ 2010. 12. 31.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전지역
- 등록대상 :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생후 3개월이상 개
- 사업량 : 5,000두
- 사업비 : 100,000천원(시비 50%, 구비 50%)
- 사업내용 : 동물등록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등록대행비 등 지원
 - 재료구입비 : 주요물품 구매계약 체결(입찰 또는 수의계약 추진)
 - ※ 주요물품 :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증, 인식표, 마이크로칩 리더기 등
 - 등록대행비 : 8,000원/두

- 수수료

- 등록신청(마이크로칩 사용) : 1건당 16,000원
- 감면기준
 - a.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인 자가 개를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b.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c.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d.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한 개를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호환 가능한 장치의 경우에만 해당)
 - e. 중성화 수술이 된 개를 등록하는 경우 50% 감면
 - f. 2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각각 25% 감면

※ 수수료를 적용함에 있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등록신청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2. 등록대행업체 자격조건 (※ ①~③조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병원을 개설한 자
- ② 서구에 소재하고 소동물(개,고양이)을 주로 진료하는 동물병원
- ③ 컴퓨터(인터넷 연결) 및 디지털카메라 사업장 내 상시보유
 - ※ 동물병원에서 구로 신청서 송부
 - 주 1회 이상 구청 방문 가능한 병원 우선적으로 계약

3. 계약기간 : 계약일 ~ 2010.12.31.

4. 주요 계약조건

- 동물등록에 따른 수수료 : 두당 8,000원
- 대행업무의 범위 : 신청서접수, 시술, 1차전산입력
- 대행업체가 갖추어야할 관련 기자재 : 컴퓨터(인터넷 연결), 디지털카메라
- 책임범위
 - 마이크로칩 시술과정에 따른 책임 : 시술자
 - 마이크로칩 자체문제 : 마이크로칩 제조업체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간 : 2010. 1. 21. 09:00 ~ 2010. 1. 28. 17:00까지 접수
- 방법 : 서구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 ☎032)560-4457 -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① 동물등록사업 등록대행자 신청서 1부
 - ② 동물병원 신고필증 사본 및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

6. 소요용품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

- 마이크로칩, 마이크로칩 리더기, 핀패드, 동물등록 대행업체 표식, 관련서식 등

7. 기타 문의사항

- 서구청 지역경제과 : 560-4457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89호

경인아라뱃길사업지구내 토지 출입 통지 공고

경인 아라뱃길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조사 및 측량 등 실태조사를 위한 출입 통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0 1 0. 1. 20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2. 사업의 종류 : 경인 아라뱃길사업
3. 출입할 토지의 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백석동, 시천동, 경서동, 왕길동 일원
4. 출입할 목적 :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5. 출 입 기 간 : 2010. 1. 20 ~ 2010. 12. 31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6. 출 입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경인 아라뱃길건설단	수로공사팀장	김성한
경인 아라뱃길건설단	수로공사팀 보상과 차장	김한경
경인 아라뱃길사업처	경영팀 보상·분양과 차장	김정호
경인 아라뱃길건설단	수로공사팀 보상과 대리	김성현
경인 아라뱃길건설단	수로공사팀 보상과 대리	안연경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 경인 아라뱃길건설단(☎ 032-540-0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입토지 세목조사 (서구)

○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	인천시 서구 검암동	67		도		40,153	1,872	국(국토해양부)		교량
2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0	3	도		5,305	56	인천직할시	0	교량
3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0	12	철		193	162	국(건설교통부)	0	교량
4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0	13	철		53	53	국(건설교통부)	0	교량
5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5	전		53	50	김남영	인천 부평구 부평동 364-16	교량
6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6	전		56	56	홍재구	인천 서구 경서동 268	교량
7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7	철		84	18	국(건설부)	0	교량
8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22	철		421	26	국(건설교통부)	0	교량
9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23	철		277	277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0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24	도		32	2	인천시		교량
11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28	철		385	62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2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29	철		59	59	국(건설부)	0	교량
13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31	철		582	518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4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32	철		246	138	국(건설부)	0	교량
15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35	철		116	39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6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36	철		83	11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7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38	철		166	5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8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1	56	전		878	878	김남영 외1인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364-16	교량
19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2	6	전		177	177	이상백	인천시 북구 부평동 10-306	교량
20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3	1	전		306	30	홍재구	인천시 서구 경서동 268	교량

□ 편입토지 세목조서 (서구)

○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21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3	10	전		413	413	홍재구	인천시 서구 경서동 268	교량
22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6	1	도		768	768	인천직할시	0	교량
23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7	2	도		175	175	전동욱	인천시 북구 검암동 216	교량
24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7	3	도		187	187	인천직할시	0	교량
25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8	2	구		246	246	국(건설부)	0	교량
26	인천시 서구 검암동	218	5	도		4,411	3,330	인천직할시	0	교량
27	인천시 서구 검암동	362		도		2,790	2,114	인천시		교량
28	인천시 서구 검암동	363	2	도		10	10	국(건설부)	0	교량
29	인천시 서구 검암동	363	3	전		62	62	인천직할시	0	교량
30	인천시 서구 검암동	366	2	도		648	433	국(건설교통부)	0	교량
31	인천시 서구 검암동	369	1	임		350	9	국(재무부)		교량
32	인천시 서구 검암동	370	8	철		2,139	13	국(건설교통부)	0	교량
33	인천시 서구 검암동	370	24	전		13	13	진제섭 외1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391-33	교량
34	인천시 서구 검암동	399	43	도		157	18	인천직할시	0	교량
35	인천시 서구 검암동	399	52	구		29	29	국(농림수산부)	0	교량
36	인천시 서구 검암동	487	13	도		321	2	국(건설교통부)	0	교량
37	인천시 서구 검암동	487	15	도		201	201	국(건설교통부)	0	교량
38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2	3	공		541	536	인천시서구	0	교량
39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2	5	대		272	272	황규옥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24블럭 33-36 롯데우림필유아	교량
40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2	6	대		860	860	이용대 외 1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동 137	교량

○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41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2	7	대		268	268	황규옥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24블럭 33-36 롯데우림필유아	교량
42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6	1	도		154	154	인천시서구		교량
43	인천시 서구 검암동	496	2	공		2,000	2,000	인천시서구		교량
44	인천시 서구 검암동	539		도		154	113	인천시 서구		교량
45	인천시 서구 검암동	543		도		200	107	인천시 서구		교량
46	인천시 서구 검암동	556		도		17,208	6	인천시 서구		교량
47	인천시 서구 검암동	595	1	공		633	149	인천시서구		교량
48	인천시 서구 검암동	596	2	공		340	244	인천시서구	0	교량
49	인천시 서구 검암동	685		도		3,717	25	인천시 서구		교량
50	인천시 서구 검암동	688		도		2,454	59	인천시 서구		교량
51	인천시 서구 검암동	산69	7	도		1,108	1,108	인천직할시	0	교량
52	인천시 서구 백석동	28	2	도		165	91	국(국토해양부)		교량
53	인천시 서구 백석동	28	3	학		13,511	174	인천시(교육감)		교량
54	인천시 서구 백석동	36	2	도		40	40	인천시 서구		교량
55	인천시 서구 백석동	36	4	전		6	6	조세형 외1인		교량
56	인천시 서구 백석동	36	5	전		45	45	조세형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9-1	교량
57	인천시 서구 백석동	37	2	도		132	132	심순봉	인천시 북구 백석동 104	교량
58	인천시 서구 백석동	37	3	답		104	104	조세형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9-1	교량
59	인천시 서구 백석동	44	5	전		158	158	홍순학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3-34	교량
60	인천시 서구 백석동	44	6	전		3	3	홍순학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3-34	교량

□ 편입토지 세목조사 (서구)

○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61	인천시 서구 백석동	46	2	답		1,021	20	김순복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106동 1704호	교량
62	인천시 서구 백석동	47		전		274	274	국(국토해양부)		교량
63	인천시 서구 백석동	48	3	답		1,171	273	홍순왕	인천시 서구 백석동 121	교량
64	인천시 서구 백석동	48	7	도		319	319	홍순왕	인천시 서구 백석동 121	교량
65	인천시 서구 백석동	48	8	답		2,640	2,640	홍순왕	인천시 서구 백석동 121	교량
66	인천시 서구 백석동	48	9	전		41	41	홍순왕	인천시 서구 백석동 121	교량
67	인천시 서구 백석동	49	1	도		694	595	국(국토해양부)		교량
68	인천시 서구 백석동	49	2	전		626	3	김형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0-78 창보아파트 101동 903호	교량
69	인천시 서구 백석동	49	3	도		1,326	1,099	국(건설교통부)	0	교량
70	인천시 서구 백석동	49	4	답		140	139	정하원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8-8 상가주택	교량
71	인천시 서구 백석동	49	12	전		596	596	박현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10-512	교량
72	인천시 서구 백석동	50	2	도		12	12	류정성		교량
73	인천시 서구 백석동	50	5	전		1,731	1,731	심현무	인천시 서구 백석동 154-1	교량
74	인천시 서구 백석동	50	6	전		414	414	심현무	인천시 서구 백석동 154-1	교량
75	인천시 서구 백석동	50	7	도		1	1	류정성		교량
76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104	도		6,857	1,690	인천직할시	0	교량
77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112	전		11	11	이효섭	인천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동 305호	교량
78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114	대		85	85	이영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67-90	교량
79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184	전		68	68	김종만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114	교량
80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185	전		136	3	이영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67-90	교량

□ 편입토지 세목조사 (서구)

○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81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240	전		3,854	3,854	조종환	인천시 북구 산곡동 125	교량
82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241	전		229	229	이호섭	인천시 서구 가좌동 158-12 덕산아파트 2동 305호	교량
83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242	대		321	321	이영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67-90	교량
84	인천시 서구 백석동	51	243	전		9	9	이영만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67-90	교량
85	인천시 서구 백석동	54	2	도		4,042	3,409	인천시	0	교량
86	인천시 서구 백석동	54	17	답		101	101	이란숙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465-26	교량
87	인천시 서구 백석동	54	18	답		55	55	김평군	인천시 서구 석남동 산66	교량
88	인천시 서구 백석동	54		도		2,346	254	인천시		교량
89	인천시 서구 백석동	55	16	전		81	58	심현신	인천시 서구 백석동 145	교량
90	인천시 서구 백석동	55	18	답		138	138	권연화	인천시 서구 백석동 104	교량
91	인천시 서구 백석동	55	19	대		89	89	김기자	인천 서구 마전동 639 영남탑스빌아파트 117-21	교량
92	인천시 서구 백석동	226	2	도		2,839	382	국(국토해양부)		교량
93	인천시 서구 백석동	227	1	구		11,787	944	국(건설부)	0	교량
94	인천시 서구 백석동	232		도		552	552	국(국토해양부)		교량
95	인천시 서구 백석동	233		구		2,979	104	국(국토해양부)		교량
96	인천시 서구 백석동	234		도		2,625	192	국(국토해양부)		교량
97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2	2	임		4,184	9	박세안 외1인	인천시 남구 도화동 412	교량
98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2	7	임		595	595	김기도	경성부 신당정 340번지의 13	교량
99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2	8	임		180	33	박세안 외1인	인천시 남구 도화동 412	교량
100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3	6	도		3	3	박세안	인천시 남구 도화동 412	교량

□ 편입토지 세목조서 (서구)

○ 사업명 : 경인 아라뱃길사업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본번	부번	공부	현황	공부	편입	성명	주소	
101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3	8	도		253	253	박세안	인천시 남구 도화동 412	교량
102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4	5	임		26	26	조세형	인천시 서구 백석동 산19-1	교량
103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2	7	도		855	19	국(건설교통부)	0	교량
104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2	85	도		521	13	인천직할시	0	교량
105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9	1	전		34	29	김순복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106동 1704호	교량
106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9	2	전		253	80	김정자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5 교동마을 현대 필그림아파트 109동 1404호	교량
107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9	5	전		353	353	김순복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106동 1704호	교량
108	인천시 서구 시천동	169	6	전		221	221	김정자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625 교동마을 현대 필그림아파트 109동 1404호	교량
109	인천시 서구 시천동	170	2	전		65	65	김정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297 현대아파트 112동 202호	교량
110	인천시 서구 시천동	190		도		188	5	국(국토해양부)		교량
111	인천시 서구 시천동	산61	1	임		894	668	김금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76 푸른마을 502동 1205호	교량
112	인천시 서구 왕길동			공유수면			50,270			교량
113	인천시 서구 경서동			공유수면			56,605			교량
114	인천시 서구 경서동			공유수면			13,552			교량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1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동부공원사업소)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제28조(재결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0 1 0 . 1 . 2 1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연희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 명 : 인천광역시장 (수임자: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도시자연공원 조성(시설물 등 포함)
5. 열 략 기 간 : 2010. 1.21. ~ 2010. 2. 8.
6. 열 략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 032-560-4805)
7. 의 견 서 제 출 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
8. 대 상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 (원본: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비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805),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032-440-5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7호

신조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한 공인의 인영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 21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인신조 사유
 - 통합민원창구 운영에 따른 인증기 구입(검암경서동)
2. 공인의 사용 예정일 : 2010년 2월 1일
3. 신조공인 인영

“별첨 참조”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4호선, 사업명: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4호선, 사업명: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도로개선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0. 1.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4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3류 4호선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면 적 : 1,202㎡
 - 규 모
 - L=199.1m, B=6.5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7. 2. ~ 2009. 12. 31. 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99호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2류180호선, 사업명:석남중학교 진일로 개설공사)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2류180호선, 사업명:석남중학교 진일로
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0. 1.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7-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2류 180호선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면 적 : 1,370㎡
 - 규 모
 - L=151m, B=9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7. 5. ~ 2009. 12. 31. 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0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 2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 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함

2. 주요내용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여 규정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1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947】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장에 제3절(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 및 제4절(제46조의5부터 제46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46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6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46조의4(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25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46조의5(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46조의6(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6조의7(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46조의4를 준용한다.

제3장(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p> <p>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세 2. 재산세 <p>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세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통세</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u><신설></u></p>	<p>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보통세</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절 주민세 재산분</u></p> <p><u>제46조의2(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u>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 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현행	개정안
<p><신설></p>	<p>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p> <p>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p> <p>제46조의3(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p> <p>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신설></p>	<p>제46조의4(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세 조례」 제25조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p> <p>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p> <p>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현행	개정안
	<p>4. <u>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p> <p>5. <u>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p> <p>6. <u>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p> <p>7. <u>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u></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p>
<u><신 설></u>	<p>제46조의5(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u>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의2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u></p>
<u><신 설></u>	<p>제46조의6(세율) <u>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u></p>
<u><신 설></u>	<p>제46조의7(신고의무) ① <u>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② <u>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46조의4를 준용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제3장 목적세	<삭제>
제1절 사업소세	<삭제>
제47조(납세의무자) 구내에 사업소(매	<삭제>
년 7월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	
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계기	
하는 자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재산할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	
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	
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	
울 수 있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48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	<삭제>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총액	
제49조(세율)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삭제>
각호와 같다	
1.재산할: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종업원할:종업원 총급여액의 100분	
의 0.5	

현행	개정안
<p>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p>	
<p>제50조(납기)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를 납기로하여 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51조(신고의무)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지번,구조,용도,층수, 건축물의 연면적,종업원수,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p>	
<p>2.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p>	
<p>3.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p>4.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p>5.건축물의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p>	
<p>6.사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p>	
<p>7.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p>	

현 행	개 정 안
<p>제52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은 매년 1월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법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지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시기 6. 기타 필요한 사항 	<p><삭제></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0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 2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었는 바,
- 조례 중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을 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감면으로 변경할 사유가 발생 함

2. 주요내용

종전 사업소세에 대한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
분으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1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947】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p>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u> 면제한다.</p>	<p>-----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면제한다.</p>
<p>제17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 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u>사업소세를</u> 면제한다.</p>	<p>제17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u> 면제한다.</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1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 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각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함

2. 주요내용

-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과 종업원할 규정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정비함
- 면허세 체납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로 하면서 전문을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2월11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세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FAX : 560-4947】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0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0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기 10일 이전에 그 뜻을 별지 제57호 서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6장의 제4절(제110조부터 제112조)을 삭제한다.

제6장의 제5절(제113조)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7절(제113조)로 하고, 제5절(제112조의2부터 제112조의4까지)과 제6절(제112의5부터 제112조의7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주민세 재산분

제112조의2(비과세 및 감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2(비과세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

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체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의3(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3(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 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2조의4(대장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4(대장 정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 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
- 8. 사업소용 건축물이 종과세대상이 된 때
- ②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6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112조의5(비과세 및 감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5(비과세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체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2조의6(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6(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① 구청장은 법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

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2조의7(대장 정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2조의7(대장 정리) ① 구청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7절 세 표

제113조(세표제출) 구청장은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에 따라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보고통제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합계분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7호부터 제8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0조(면허의 취소요구) ① 법 제 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요구는 영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체납처분에 의하여도 면허세(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 요구 예정일 10일 전에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면허취소요구통지(별지 제57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통지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교부하여 증거를 보존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사업소세</u></p> <p>제110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사업소세대장을 과세대장과 비과세대장으로 구분하여 규칙 제113조에 의하여 비치·정리하여야 한다.</p> <p>제111조(대장정리)①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사업소세과세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p>	<p>제100조(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①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려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기 10일 이전에 그 뜻을 별지 제57호서식으로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요구는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삭제></u></p> <p><u><삭제></u></p> <p><u><삭제></u></p>

현 행	개 정 안
<p>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p> <p>1.사업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을 때</p> <p>2.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p> <p>3.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었을 때</p> <p>4.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p> <p>5.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p> <p>6.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p>7.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p> <p>8.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p> <p>②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의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12조(종업원의 급여 총액조사)구</p> <p>청장은 매년 1회 이상은 당해 사업소의 회계장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의하여</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88 353 791 515"><u>당해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 확인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u></p> <p data-bbox="418 591 539 631"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 data-bbox="178 712 300 752"><u><신설></u></p> <p data-bbox="178 1487 300 1527"><u><신설></u></p>	<p data-bbox="938 591 1295 631" style="text-align: center;">제5절 <u>주민세 재산분</u></p> <p data-bbox="801 712 1436 990">제112조의2(비과세 및 감면) ① <u>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77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01 1008 1436 1464">② <u>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주민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u></p> <p data-bbox="801 1482 1436 1823">제112조의3(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u>구청장은 법 제 176조의6제3항에 따라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8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②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79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제112조의4(대장정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소를 새로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소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때 4.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아니할 때 5.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419 1189 536 1227"><신설></p> <p data-bbox="180 1308 296 1346"><신설></p>	<p data-bbox="828 405 1430 501">6.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p> <p data-bbox="828 524 1430 620">7.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p> <p data-bbox="828 642 1430 739">8. 사업소용 건축물이 종과세대상이 된 때</p> <p data-bbox="828 781 1430 1079">② 구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 data-bbox="890 1178 1358 1216"><u>제6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u></p> <p data-bbox="802 1312 1430 1615">제112조의5(비과세 및 감면) ① 구청장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 data-bbox="828 1648 1430 1951">② 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종업원분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p>

현 행	개 정 안
<p><신설></p>	<p>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p> <p>제112조의6(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처리) ① 구청장은 법 제179조의9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의 신고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주민세 재산분의 수납내역을 통보 받으면 과소납부 또는 미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미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83호서식의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p> <p>③ 신고납부기한 내에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를 한 자가 법 제71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5절</u> 세표</p> <p>제113조(세표제출) 구청장은 면허세, 재산세 및 사업소세의 부과상황을 별지 제67호 내지 제70호서식에 의거 부과시마다 정리하였다가 보고통제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 합계분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p>	<p>제112조의7(대장 정리) ① 구청장은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해당 사업소의 회계장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상황, 급여지급대장 등에 따라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총액을 조사·확인하고 지방소득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절</u> 세표</p> <p>제113조(세표제출)-----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제67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에 따라 -----.</p>

[별지 제57호 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수신자
(경유)

제목 면허(허가·인가) 취소(정지) 요구 예정 통지

귀하는 아래와 같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 169조제1항에 따라 면허부여기관에 면허의 취소(정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사항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종호	면허기관		적요		
체납내역	년도	기분(월)	체납액			납기	독촉일자	비고
			면허세	가산금	합계			

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미색모조 80g/㎡)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및 주민세 재산분 세표

(별지 제70호 서식)

구분 동별	합 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분		
	인원 (사업주)	과세표준 (액)	세액	연인원		과세표준 (액)	세액	납세인원 (사업주)	과세표준 (액)	세 액
				사업주	종업원수					
합 계										

(별지 제78호서식)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신고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면 적	세 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 색모조 80g/m²)

(별지 제79호서식)

<div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처리부</div>														
○○연도 ○○월분											(○○동)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중과 여부	면 적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²)

(별지 제80호서식)

수정신고 및 납부 처리부

접수 번호	성 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과세물건	물건의 소재지	당초신고내용				수정신고내용					결 재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일자	세목	과세표준	납부세액	사유	담당자	담당	과장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²)

(별지 제81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비과세·감면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번호	토지 면적	성명(법인명)	상호	납세자 주소	종업원 수	비과세 감면액	사 후 관 리 내 용						결 재				
		주민(법인) 등록번호	전화 번호				1차	확인 내용	4차	확인 내용	7차	확인 내용	10차	확인 내용	담당자	담당	과장
							2차	확인 내용	5차	확인 내용	8차	확인 내용	11차	확인 내용			
							3차	확인 내용	6차	확인 내용	9차	확인 내용	12차	확인 내용			

297mm × 210mm(미색모조 80g/m²)

(별지 제82호서식)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 ○○월분

(○○동)

접수 일자	신고 일자	납 세 의 무 자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납부세액	납부일자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담당	과장

364mm×257mm(미색모조 80g/m²)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117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담배사업법 폐업사항에 대하여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상호	소재지	성명	구분	폐업일
전주콩나물해장국	인천 서구 석남동 576-58	최용현	일반	2010.01.25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매인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0.01. 25 - 2010. 02. 01

나. 접수 및 문의처 : 서구청 지역경제과 (☎560-4434)

다. 접수서류

- 1)소매인지정신청서
 - 2)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건물등기부등본사본 1부
 - 5)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 라. 참고사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
- 1)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우선지정신청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0. 01.2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